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(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)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37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공유재산(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) 현황

- 위치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길 20(동화약품 본사 2층)
- 면적: 건물 753.13㎡, 토지 78.46㎡
- 재산관리관: 관광정책과

나. 공유재산 사용계획

- 사용자(수허가자) : 서울관광재단(출연기관)
- 허가기간 : '26. 6. ~ '31. 6. [5년]
- 예상 감면액 : 17,763천원
- 허가방법 : 수의계약(「공유재산법」 제20조, 동법 「시행령」 제13조)
- 공유재산 주요사용계획(안) :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 운영

시설 구분	활용 계획(안)
대회의실	관광산업 관련 세미나, 포럼 및 관광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
소회의실	관광분야 간담회, 소규모 교육 및 워크숍 등
전시공간	서울 관광정책 및 관광 콘텐츠 홍보 등
기타(사무공간)	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업무 공간

다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市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
 - 市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이 서울관광 전시·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은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(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)으로 비영리 사업에 해당되며,
 - 市 출연기관 비영리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할 경우 「공유재산법」 제24조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
- 불필요한 세입·세출예산 편성 지양으로 행정·회계 효율성 제고
 -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(징수)할 경우, 사용료만큼의 市의 세출(출연금)과 세입(사용료)도 함께 증액되는 구조로, 사용료 부과에 따른 행정·회계의 비효율성 방지

※ '26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: '의견제시'

- 심 의 일: '26. 5. 7. (목)
- 심의결과: 의견제시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해야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야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
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남규현 (☎ 2133-2811)